

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87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877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소185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배구량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8. 29.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소185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버스공제사업을 하는 자이고, 그 공제계약차량으로 C회사(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가 있다.

나. D는 2022. 9. 14. 20:1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원고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후방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G병원에서 2022. 9. 15.부터 2022. 9. 16.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2022. 9. 17.부터 2022. 9. 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22. 9. 16. 및 2022. 11. 8. 피고에게 위 치료비 합계 1,784,960원을 공제금(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진로변경제한선 위반, 즉 피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1,784,96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버스의 운행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오토바이는 소도로에서 나와 5, 6차로를 가로지른 다음 곧바로 진로변경이 제한된 흰색 실선 구간을 넘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 버스 앞에 멈춘 점, 원고 버스는 피고 오토바이가 멈추고 약 1~2초 후 3차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4차로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 3차로로 합류해야 함)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버스가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 버스로서는 피고 오토바이 등 다른 차량이 진로변경제한선을 넘어와 원고 버스 앞에 멈출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전방을 보지 아니하고 후사경(백미러)을 통하여 합류해야 하는 3차로를 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버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과실비율은 원고 버스 40%, 피고 오토바이 60%).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료비로 지급받은 1,784,960원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1,070,976원(= 1,784,960원 × 60%)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1,010,9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치료비를 최종 지급한 다음 날인 2022. 11.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전에 원고가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양소영

판사김혜림